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정 보 위 원 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사 비공개 규정 정비〉

■ 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12호)

2024. 11.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개정 취지	3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	4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 내용	5
4. 검토의견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락 · 박민규 · 황정아 · 윤건영 · 김영환 · 김 윤
김성환 · 채현일 · 백승아 · 양부남 · 문금주 · 신정훈
정성호 · 박지혜 · 정진욱 · 최민희 · 허 영 · 정준호
전진숙 · 박희승 · 이기현 · 박홍배 · 김태선 · 황명선
이원택 의원(25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월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사유를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전제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회계) ① ~ ⑥ (생략)	제16조(예산회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u>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 -----.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 「국회법」은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54조의2)에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됨을 규정하고 있었음.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¹⁾.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어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국회 회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1)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음²⁾.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 내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 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① 「국가정보원법」 제8조³⁾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안건, ②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건, ③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

2)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3)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가정보원법」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전 심사과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있는 경우, ④ 그 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안전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안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안전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정보원법」 제8조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
<신 설>	2.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전
<신 설>	3.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4. 그 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動議)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해당 회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국회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관련된 내용의 비공개 여부 또한 「국회법」에 따라 결정되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가 비공개로 결정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과 같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을 개정하여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을 「국회법」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舊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심사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舊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 본문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국가정보원 예산심사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의 명시적 근거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대표발의)의 내용과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경우,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국가정보원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회의의 비공개 요건에 관한 것은 「국회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은 정보기관의 조직·인원뿐만 아니라 정보 목표·활동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된 국가 기밀 사

항으로, 대외 공개 시 정보역량 노출과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⁵⁾.

결론적으로, 「국회법」의 요건과 달리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와 관련한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유지할 특별한 필요성 및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문 의 처
02) 6788-5614

5) 국가정보원,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4.8.